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200027 판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일

피 고 1. B

2. C교회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 7. 6. 접수 제21433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 6. 8. 접수 제11937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 4.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6. 30. 원고(대표자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6. 원고의 대표자를 D에서 피고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대표자 변경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8. 소유자인 원고의 명칭을 ‘C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명칭 변경등기’라고 하고, 이 사건 대표자 변경등기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변경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E, F, G, H, I, J, K, D(이하 ‘E 등’이라 한다)는 2020. 12. 18. C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회의 명칭을 ‘A교회’로, 대표자를 E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교회는 실체가 없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변경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변경등기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그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전혀 새로운 교회인 피고를 표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대표자 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교회는 이 사건 명칭 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등 참조). 또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원고는 1980년대 초경 L 목사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교회 건물로 사용하여 왔다.
- ② L 목사는 1990년대쯤 목포로 이사를 가서 더 이상 원고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 B이 원고 교회의 목사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 ③ 이 사건 각 변경등기로 인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교회의 주소가 동일하다.
- ④ 원고와 피고 교회의 정관이나 규약 또는 교인이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원고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명칭과 대표자가 피고들로 변경되었을 뿐 피고 교회가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⑤ E 등은 2020. 12. 18.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회의 명칭 및 대표자를 ‘C교회(대표자 B)’에서

‘A교회(대표자 E)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 교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변경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확정된 판결 등을 첨부한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시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로써 이 사건 각 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

별지

목 록

- 1. 전남 해남군 종교용지 532㎡
- 2. 전남 해남군 시멘트 벽돌조 스토리지용 단층창고 165.3㎡

끝.

